

국 토 교 통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창리천 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구군

관 련 자 ① 양구군 ○○○○과

지방○○○○ ○○○

② 양구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09. 1.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05. 8. 26.부터 현재까지 ‘○○○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양구군(○○○○과)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사업비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2. 5. 23. 강원도 ○○시 ○○면 ○○리 0000-0에 있는 ○○○○○○(주)(대표자 ○○○)와 ‘○○○ 재해예방사업’을 총 공사부기금액 1,447,712,000원¹³⁰⁾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5. 23. 착공하여 2014. 4. 6. 준공하였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0) 2014. 4. 4. 총 공사부기금액 2,141,755,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시행지침」 제25조에 따르면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 대상 범위는 당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구역내로 제한하며, 하천구역 이외의 지역에 치·이수 또는 친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양구군(○○○○과)에서는 ‘○○○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 상류 하천(지목 : 구) 정비공사(총연장 260m)를 2014. 4. 4. 위 공사 설계에 반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6. 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 상류 하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66,965,000원¹³¹⁾ 상당

131) ○○○ 상류 하천정비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111,609,000원 중 국고보조금 비율(60%) 임

이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보조금 66,965,00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